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】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2023. 9. 11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8. 30. / 이정애 의원 등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8. 30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, 학교, 대형상가, 공동주택 및 주차 전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설유지·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불법주차 문제 해소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 대상 범위·기간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~제6조)
-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변경·취소,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~제9조)
- 주차장의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,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함.

-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, 주차거부,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2조~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-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및 밀집 상가주택 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근 공공기관, 학교, 대형상가, 공동주택,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 내용으로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CCTV 등 방범시설과 주차면 도색, 포장 등 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. 1부.